

## UCP 600 합리성 행위기준의 적용방식 : 서류검토기간의 효율과 형평의 균형\*

김 기 선 \*\*

---

I. 서 론

II. UCP 600 제14조(b)항의 재해석 : 효율과 형평의 균형

III. UCP 600 제14조(b)항의 서류치유원리에 대한 파급효과

IV. 결 론

---

주제어 : UCP 600 제14조(b)항, 서류치유원리, 상태조건부재화

### I. 서 론

신용장이란 공정성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당사자들 간의 거래 리스크가 배분되고 신용장의 효용이 분배되는 자생적 시장질서로서의 고안물이다.

---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군산대학교 대학자체 학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그러나 신용장의 형식과 내용을 정형화 하여 당사자들 간의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장 거래 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신용장 거래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sup>1)</sup> 당초의 신용장통일규칙(1933)을 돌이켜 볼 때, 신용장 거래의 중심점인 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신용장 거래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신용장통일규칙이 그간 6차 개정(이하 UCP600이라 칭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관련 이해관계의 충돌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역설적 현실은<sup>2)</sup> 신용장통일규칙이 지향하고 있는 신용장 거래 관습의 효율적 운용 원리와 공정성 작동 메커니즘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6차 개정(이하 UCP600이라 칭함)의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고, 심지어 실무계로부터 수궁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부문은 바로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14조 (b)항(이하 UCP600 제14조 (b)항이라 칭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수년전 IIBPL 발간의 UCP600 논평서(2007)에서 James E. Byrne은 본 조항에 대해 ‘은행의 서류 검토행위에 대해 통일적 해석을 해치는 유인’이라고 당해 조항을 혹평한 바 있다.<sup>3)</sup> 이는 그간 신용장통일규칙의 대표적 행위공준이었던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reasonableness) 기준이 UCP600에 이르러 당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폐기됨으로써 오히려 더 심각한 해석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장 거래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은행 간 또는

1)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Ronald Press Co., 5th ed., 1974, pp.196-201

2) *Documentary Credit Insight*, "Expert Commentary by Boris Kozolchyk," ICC Pub. S. A., Winter, 1997, p.5참조; *UCP, 6th Revision*, 2007 Introduction, ; 김기선, "신용장 거래관습 최적 편성방안의 모색,"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 49권, 2011, p.112 참조

3) James E. Byrn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IIBLP, 2007, pp.125-139 : 한편 UCP600 제14조 (b)에 따르면, "개설은행의 지정에 의해 행동하는 지정은행,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가 제시된 날 익일로부터 최대 제 5 은행 영업일을 갖는다. 당해 기간은 유효기일 또는 서류제시를 위한 최종일의 당일 도래 또는 그 기간 이후의 경과가 초래되는 경우라도 단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과 수익자 간에 서류의 검토·취급과 관련하여 이들의 행위 수준이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류검토기준과 서류검토기간이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는 수익자나 서류검토은행 간에 그 일치의 정도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에 따라 격차를 보일 수 있어 근본적으로 이 마찰 요인을 제거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특유의 보완 기제가 신용장거래관습에 필요하게 되는 바, 그것이 바로 서류치유원리의 적용이라 하겠다.

서류치유원리(doctrine of documentary cure)는 신용장 유효기일을 중심으로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가장 첨예한 영역인 은행과 수익자간의 합리적 주의 수준의 조율 및 합치를 위해 소위 가치상대적 공정성이라는 본질적 원리 하에서 신용장거래가 희망적으로 종결되게끔 유도해주는 신용장거래 특유의 운용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UCP600은 합리성 요건을 삭제하고 서류검토기간의 활용여지를 은행 중심의 고유 부존 권한으로 결정함으로써 은행의 서류검토 완료 후 이루어지는 수익자 측면의 불일치사항 보완 후 서류제시 행위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권익의 형평성을 해쳐 그간 합리성 요건으로 지탱되어 온 이들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에 오히려 더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UCP600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신용장의 실질적 권리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전반적 조항들의 운용기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강원진(2006, 2007), 박명섭 외 2인(2006), 박석재(2007), 서백현(2006), 서정두(2007), 이용근·최유섭(2006), 이제현·김연숙(2007), 최석범(2006), 한낙현·김종석(2007), 한재필(2006, 2007)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외의 연구로는 유력한 학술지 보다는 신용장 정보지의 역할을 하는 Documentary Credit Insight의 George(2005), Dolan(2005), Taneja(2006), 그리고 The Business Lawyer (2006-2012)와 Annual Survey Report (2006-2012)등의 판례연구와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발간의 James E. Byrne의 UCP600 논평서(2007)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의 여건을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 그 해석적용에 있어 가장 큰 내재적인 난맥구조를 노정하고 있는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해석과 서류치유원리 적용에 대한 중층적 분석이 국내외적으로 전무하여

연구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UCP600 제14조(b)항의 개정결과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합리성 요건이 사라진 후 은행과 수익자간의 이해의 균형과 편익 공유의 맥락 구조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더 이상의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본 조항은 은행과 수익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지, 그 결과 새롭게 재편성 되는 신용장 거래질서는 어떠한 맥락 구조 하에서 최적의 해석적용방안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 그 파급효과와 시사점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둔다.

## II. UCP 600 제14조(b)항의 재해석: 효율과 형평의 균형

### 1. 서류치유원리의 적용을 위한 기본전제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신용장통일규칙이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효율적으로 담보해주는 가운데 신용장거래의 실질적 권리당사자들의 거래리스크를 최적 배분시키고 그에 따라 창출되는 편익을 공평하게 분배시킬 수 있다면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여타의 계약 관계에서처럼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의 서류 취급관련 조항들에 이들 효율성과 형평성 원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미묘하고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sup>4)</sup>

신용장 거래질서가 마치 완전시장모형에 정확히 부합하여 운행되고 있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은 비교적 조그만 역할만을 담당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신용장 거래질서는 소위 완전 정보나 영(零)의 거래비용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sup>5)</sup> 은행과 수익자간의 선택행위에 수반되는 리스크

4) 신용장 거래관습의 법전화 또는 규칙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Henry Harfield,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1990, p.1-11; 김기선,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효율과 형평의 구현방식에 대한 규범적 접근," 「무역상무연구」 제 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pp.319-315참조.

5) 김기선, "서류검토의 기술적 효율과 은행의 선택행위 결정," 「무역학회지」, 제 24권 3호,

를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위적인 거래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는 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운용기준이 서류치유원리라 하겠다.

서류치유원리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내용에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는 신용장 거래에서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당해 서류의 하자사항을 보완, 신용장의 유효기일까지 재제시도록 하는 순수한 목적으로서의 은행의 상업적 배려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가치 상대적 공정성’이라는 신용장거래관습의 본질적 원리를 반영한 운용원리를 말한다.<sup>6)</sup> 따라서 서류치유원리는 상술한 바와 같은 신용장거래에서의 이해관계충돌에 대해 리스크 분담(risk-sharing)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은행과 수익자 간의 권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자발적 합의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 그 중요성이 있다.

서류치유원리는 신용장 유효기일을 중심으로 은행의 서류검토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은행이 자신에게 부여된 서류검토기간 모두를 소진한 후 서류하자사항을 수익자에게 보완케 할 경우 이미 유효기일이 경과한 후라면 수익자의 서류치유노력은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활용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난 80여 년간 신용장통일규칙을 지배해 온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은 수익자에 대한 서류치유원리 적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 또는 도래 전 당해 시간적 제약 속에서 은행 측면의 서류검토의 완료와 수익자 측면의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은행-수익자간의 실무적 공동협조행위 실현과정이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과연 은행이 수익자에게 서류의 치유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의 검증에 수반하게 되며, 아울러 이를 수익자 측면에서 판단해본다면 서류의 보완·수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만큼 충분한 치유기간을 상정하고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서류검토기간

---

한국무역학회, 1999, p.3

6) Gerald T. McLaughlin, "Letter of Credit :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 *Fordam Law Review*, Vol. 50, 1982, pp.887-894 참조; 김기선, "신용장거래관습 최적 편성 방안의 모색," p.113

합리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sup>7)</sup> 이는 곧 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활용 행위는 상대방인 수익자 측면에서는 합리적 서류치유 적용 행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UCP600 제14조(b)항의 재해석

UCP600 제14조 (b)에 따르면, “개설은행의 지정에 의해 행동하는 지정은행,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가 제시된 날 익일로부터 최대 제 5 은행 영업일을 갖는다. 당해 기간은 유효기일 또는 서류제시를 위한 최종일의 당일 도래 또는 그 기간 이후의 경과가 초래되는 경우라도 단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시하였던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개념은 UCP600 제14조 (b)항과는 달리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어 이 기간 중의 고의적 지연은 정당화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해 합리성 개념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원리뿐만 아니라 서류치유원리 적용을 위한 은행과 수익자간의 가치 상대적 공정성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으로 말미암아 은행과 수익자간의 이해관계의 충돌<sup>8)</sup>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경험률<sup>9)</sup>에 따라 UCP600 제14

7) *Ibid.*, p.120

8) ‘현실적으로 은행의 서류검토요원이 당해 은행에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함에 그 업무량이 과다하기도 하고, 또 업무처리의 방식은 제출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제출된 서류의 검토에는 2-3일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다. 은행의 서류검토 절차는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된 당시의 은행의 관련업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연은 있을 수 있다. 서류치유원리로 말미암아 은행이 자신이 준수하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이탈해서까지 황급히 서둘러 서류를 검토 완료하는 것을 중용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USCIB 공식의견서(1996)가 법원에 보충의견서로 제출되는 등 신용장통일규칙이 5차 개정된 후 서류검토기간 7일을 놓고 은행과 수익자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Letter of Credit Update*, vol.12, no.2, Feb., 1996 pp.26-36참조; 개정 미국통일상법전 제 5조의 해석도 이와 유사하다(개정미국통일상법권 제 5-108조 Comment 2 참조)

9) 관련된 많은 판례 중 대표적 판례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nc. vs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1991)* ; *Banque de L'Union Haitien, S.A. vs Manufacturers Hanover International Banking Corp.(1991)* ; *Crocker Commercial Services vs Countryside Bank(1991)* ; *Bank of Cochin vs Manufactures*

조(b항)은 그간 신용장통일규칙에 면면히 이어져 왔던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을 폐기하고 「서류검토기간 5일」을 은행의 부존적 권리 영역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재 UCP600 제14조(b)항과 관련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즉 서류검토기간이 은행 고유의 권리부존영역으로 확정됨으로써 당해 서류검토기간의 단축유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의 서류검토기간과 수익자의 서류치유기간과의 이해의 충돌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실의 문제(question of fact)가 아니라 수익자 스스로 서류치유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손실방지체계의 일환으로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자율적 대처영역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UCP600 제14조(b)항의 이 같은 미묘한 변화는 은행과 수익자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파생효과를 예측 가능케 한다.

하나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결제라는 합목적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과도한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간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서류치유원리라는 은행으로부터의 가치상대적 공정성 원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수익자는 자신의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효율적인 행위를 선택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신용장 거래 관습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에게 안정적 서류검토행위기간을 보장해 준 결과 은행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서류검토행위를 하게끔 유도하기 보다는 분쟁의 방지효과를 더욱 강조하는 은행 중심 논리의 행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류치유원리 적용과 서류검토기간 활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효율과 형평의 최적 균형점(optimal equilibrium)을 지향하기 보다는 분쟁방지를 위한 안정화 목적의 강제화 된 균형조건(compulsory equilibrium)만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Hanover Trust Co.(1986) ; Alaska Textile Co. vs Chase Manhattan Bank(1992) ; Celotex Corp vs Catrett((1992) ; Leaseamerica Corp. vs Northwest Bank Duluth, N.A.(1991) ; Toyota Tsusho Corp. vs America Bank(1996) ; Bankers Trust Co. vs State Bank of India(1991) ; Bayerische Vereinsbank Aktiengesellschaft vs National Bank of Pakistan(1997) 등.*

본 연구가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바는 UCP 600 제14조(b)항이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합리성 요건을 삭제하고 은행에게 당해 서류검토기간의 완전 활용을 권리부존영역으로 보장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익자의 서류치유원리 적용을 위한 은행의 공동협조행위는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익자의 합리적 손실방지노력에 교란을 불러일으킬 개연성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신용장거래관습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5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신용장통일규칙이 피하였던 서류검토기간과 서류치유원리 적용의 메커니즘이 합리성이라는 요건 속에서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행 UCP600 제14조(b)항의 개정은 서류치유원리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고, 둘째, 그 결과 수익자의 기대 효용의 변화와 최적 행위선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지, 나아가 이 같은 변화는 신용장거래관습에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는지 상태조건부 모형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 Ⅲ. UCP600 제14조(b)항의 서류치유원리에 대한 파급효과

#### 1. UCP600 제 14조(b)항과 서류치유원리

##### : 수익자의 위험회피도와 리스크 프리미엄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수익자는 자신의 신용장 거래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성적(rational)행위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용장 금액이라는 기대 현금흐름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려 할 것이지만, 만일 자신의 신용장 금액 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신용장 거래는 추상적인 거래이므로 신용장 금액이라는 기대 현금흐름은 서류의 가치로 대변된다. 당해 서류의 가치는 신용장 조건과 내용과의 불일치 사항들의 존재로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sup>10)</sup> 이와 같은 거래에 임하여 기대 현금을 최대화 하려는 수익자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



함에 위험 회피적 효용(risk-averse utility)을 갖는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이와 같이 수익자의 위험기피성을 정의해내면 서류치유원리적용에 있어서의 수익자 행위 특성을 아래와 같이 일반화 할 수 있게 된다.<sup>12)</sup>

수익자의 위험 회피도는 당해 수익자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용의와 관련이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은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기대화폐가치와 확실성 증가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바, 이는 곧 당해 거래에서 위험을 제거하는데 기꺼이 포기하는 부의 최대 액수라는 점에서 위험 제거 비용(cost of risk)이라 할 수 있다. 신용장 거래에 임하는 수익자는 이성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위험회피적 효용을 갖는다고 가정 한 이상, 수익자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초기의 부( $\omega$ )에서 기꺼이 포기하려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같은 형태의 가치만큼을 위험 제거 비용의 차원에서 감당해 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 기대 현금흐름을 보장받기 위해 은행에 의한 서류검토의 과정을 거쳐 제출 서류의 불일치 내지 하자 사항을 명세화 받아 유효기일 도래 전까지 이를 치유·보완해야 하는 수익자가 당해 손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제거비용으로써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서류치유기간(cure period)이라 정의하도록 한다.

위험회피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수익자가 지불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즉 서류치유기간 확보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sup>13)</sup>

우선 초기의 부가  $\omega$ 인 위험회피적 효용을 가진 수익자가 신용장거래에 참여할 경우  $\tilde{\varepsilon}$  이라는 변수를 도입해 본다.  $\tilde{\varepsilon}$ 는 수익자의 서류치유기회에 제약

10) 김기선, “서류검토의 기술적 효율과 은행의 선택행위 결정.” p.232 참조

11) 수익자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효용함수를  $U(\omega)$ 라 하면 효용함수  $U(\omega)$ 는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의 형태가 될 것이며, 그 오목함의 정도가 크면 클 수록 좀 더 위험 회피적이라 할 수 있다. K. Arrow와 J. Pratt는 이러한 오목함의 정도, 다시 말해 위험 기피의 정도를  $r(\omega) = -\frac{u''(\omega)}{u'(\omega)}$  로 표현하고 있다. ; Hal R. Varian,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Norton, 1992, pp.177-178

12) 이하의 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 “상계논문,” pp.235-238 참조

13) 리스크 프리미엄의 수학적 유도방식에 대해서는 국찬표·구본열, 「현대재무론」, 비봉출판사, 1998, pp.98-101 참조

을 줄 수 있는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불확실한 변동폭을 의미하는 확률 변수(random variable)이며, 이  $\tilde{\varepsilon}$ 이 아주 작은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말해 그 불확실한 변동 폭이 거의 없다면  $E(\tilde{\varepsilon})=0$  이 된다. 그리고  $\pi$ 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하면,

$$u(w-\pi) = E[u(w+\tilde{\varepsilon})] \dots\dots\dots (1)$$

(1)식의 좌변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형태로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한 수익자의 효용을 의미하며, 우변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tilde{\varepsilon}$ 의 상황을 고려한 당해 수익자의 기대 효용을 의미한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u(w-\pi)$ 와  $E[u(w+\tilde{\varepsilon})]$ 를 같게 해주는 값을 의미한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  $\pi$ 의 크기를 유도해 봄으로써 그 의미가 신용장 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식의 좌변에서 이계테일러 급수의 근사식을 구하면,

$$u(w-\pi) = u(w) - \pi u'(w) + \frac{\pi^2}{2} u''(w) \dots\dots\dots (2)$$

이때 당해 신용장거래의 위험이 적어 이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pi$ 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pi^2$ 은 0에 접근할 것이므로  $\frac{\pi^2}{2} u''(w)$ 는 근사적으로 0에 수렴할 것이다. 따라서

$$u(w-\pi) = u(w) - \pi u'(w) \dots\dots\dots (3)$$

마찬가지로 (1)식의 우변에서 이계 테일러 급수의 근사식을 구하면,

$$E[u(w+\tilde{\varepsilon})] = E[u(w) + \tilde{\varepsilon} u'(w) + \frac{\tilde{\varepsilon}^2}{2} u''(w)] = u(w) + u'(w) E(\tilde{\varepsilon}) + u''(w) \frac{E(\tilde{\varepsilon}^2)}{2} \dots\dots (4)$$

그런데  $E(\tilde{\varepsilon})=0$  이고  $\tilde{\varepsilon}$ 의 분산을  $\sigma^2_{\varepsilon}$ 이므로

$$E[u(w+\tilde{\varepsilon})] = u(w) + u''(w) \frac{\sigma^2_{\varepsilon}}{2} \dots\dots\dots (5)$$

이제 (5)식과 (3)식은 동일해야 하므로

$$u(w) - \pi u'(w) = u(w) + u''(w) \frac{\sigma^2_{\varepsilon}}{2} \dots\dots\dots (6)$$

$$\pi = \frac{\sigma^2_{\varepsilon}}{2} \left( -\frac{u''(w)}{u'(w)} \right) \dots\dots\dots (7)$$

위 식(7)은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치유기간이라는 리스크 프리미엄  $\pi$ 는 두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하나는,  $\frac{\sigma^2_{\varepsilon}}{2}$ 이다.  $\frac{\sigma^2_{\varepsilon}}{2}$ 은 당해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 이

라는 불확실성(과연 은행이 얼마만큼의 서류검토기간을 사용할 것인가)의 분산 정도가 서류치유기간에 주는 영향을 의미한다. 즉  $\tilde{\varepsilon}$ 의 변동 폭이 커지면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분산, 즉 서류검토기간 과잉소비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위험 회피적 효용을 가진 수익자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 차원에서 더 많은 서류치유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실  $\frac{\sigma^2 \varepsilon}{2}$ 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분산크기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수익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값이 되므로 이는 당해 신용장거래에 내재해 있는 고유한 객관적 위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UCP500의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요건이 UCP600에 이르러 은행의 부존적 권리영역이 됨으로 인해 그 분산의 정도가 커졌다고 본다면 수익자가 당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즉 서류치유기간 확보의 크기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frac{u''(\omega)}{u'(\omega)}$ 이다. 이 요소는 소위 Pratt-Arrow의 절대적 위험회피계수로써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불확실성을 보는 개별 수익자의 위험회피정도를 의미한다. 의당 개별 수익자의 절대적 위험회피계수가 크면 클수록 리스크 프리미엄  $\pi$ 의 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신용장거래에서 동일한 서류 불일치사항의 발생과 이에 대한 동일한 서류검토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불확실성에 대한 개별 수익자의 위험회피의 태도와 정도에 따라 서류치유기간 확보의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2. UCP600 제14조(b)항과 수익자의 선택행위 결정

법경제학 영역에 있어 위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sup>14)</sup>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상태조건부재화(contingent commodities)분석은 불확실성 속에서 서로 다른 상황의 실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재화를 독립

---

14) Richard A. Posner & Francesco Parisi, *Law and Economic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 vol.1, Edward Elgar Pub. Ltd., 1997, 서문참조; Robert Cooter & Thomas Ulen, *Law & Economics*, 2nd ed., Addison-Wesley, 1997, pp.3-4참조

된 재화로 정의하고 재화의 여러 조합을 선택할 때 얻어지는 만족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무차별곡선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평가된다.<sup>15)</sup>

이하에서는 상태조건부재화 분석을 준용하여 UCP600 제14조(b)항의 개정예 의해 수익자의 서류치유원리적용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수익자의 기대효용변화와 최적 선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지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 (1) 상태조건부재화 모형의 전개

신용장거래에 있어 유효기일을 중심으로 수익자와 은행 간의 권익 충돌이 발생한 상태(서류치유기회의 제약)와 발생하지 않은 상태(서류치유기회의 보전)에서의 수익자의 권익의 크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호를 정하도록 한다.<sup>16)</sup>

첫째,  $x=0$  : 하자 없는 서류가 제출된다면 수익자가 서류를 보완할 치유기간의 확보가 불필요한 상태. 이때의 수익자의 권익의 크기를  $w$ 라 한다.<sup>17)</sup> [그림1]의 E점으로 표시된다.

둘째,  $x=L$  : 하자 있는 서류가 제출된다면 수익자가 자신의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치유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태. 이때의 수익자의 권익의 크기는  $w-L$  이라 한다.<sup>18)</sup>

한편 신용장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 확률이  $P$ 라면 유효기일을 중심으로 한 수익자의 서류치유를 위한 권익의 기댓값은,

$$EW = P(W-L) + (1-P)W = W - PL \dots\dots\dots (8)$$

이 기댓값이 상태구분 없이 보장된다면 E점의 기댓값과 같아지므로 이 값은

15) Thomas E. Copeland & J. Fred Western, *Financial Theory and Corporate Policy*, 3rd ed., Addison-Wesley, 1992, pp.109-144참조

16) 모형전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강태진 외 2인,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1998, pp.161-168 참조

17) 유효기일 당일 서류가 제출된다 하여도 유효기일에 쫓겨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유효기일 전에 서류가 제출되었다 해도 서류의 보완으로 유효기일에 쫓겨 수익자가 활용할 수 있고 있는 기회가 L만큼의 크기로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E점과 동일한 기대치를 주는 집합인 등기대치선상에 위치할 것이다. 이는 [그림1]의 점A로 표시된다.

점 A를 지나는 등기대치선의 방정식은 점 A에서의 기댓값인  $W-PL$  과 같은 기댓값을 갖는 조합이므로, 편의상 수평축을  $W_1$ , 수직축을  $W_2$ 라 한다면

$$W-PL = (I-P)W_1 + PW_2 \dots\dots\dots (9)$$

따라서,

$$W_2 = \frac{(W-PL)}{P} - \frac{(I-P)}{P}W_1 \dots\dots\dots (10)$$

즉, 기울기가  $-\frac{(I-P)}{P}$  인 등기대치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sup>19)</sup>

일반적으로 상태조건부재화 분석에 준용되는 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45 인 무위험선(risk-free line)상에서 등기대치선의 기울기와 일치하므로 무위험선상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 멀어질수록 위험의 정도는 증대하며,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 A는 가장 최적의 기대효용극대화 상태를 의미한다.

**(2) 상태조건부 재화 분석의 함의 : 효율과 형평의 구현**

상태조건부재화 분석은 경제적 행위주체인 한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총부( $\omega$ )의 가치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을 때 위험의 감소를 위해, 또는 더 나은 상태를 얻기 위해 가치 있는 뭔가를 일부 포기<sup>20)</sup>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 포기하는 가치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지, 그의 기대효용 극대화 조건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데에 근본적 유용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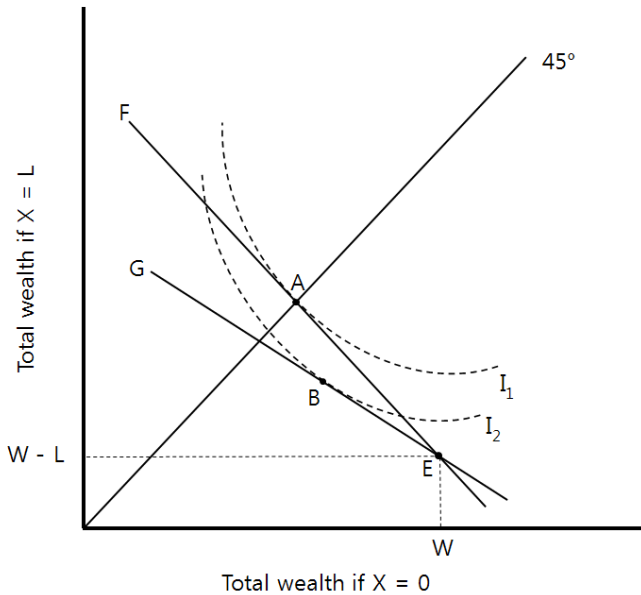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자신의 총부의 가치와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총 부의 가치를 각각의 확률을 고려하여 예측하면 그 결과의 값은 자신의 총 부의 기댓값(expected wealth : EX)이 되는 바, 이는 결국 자신의 총 부의 가치에서 손실의 기댓값( $P \cdot L$ )을 차감한 크기가 됨을 식(8)은 보여주고 있다.

19) 본 등기대치선은 공정한 승산을 뜻하는 공정승산선(fair odds line)이라고도 한다; 이준구, 「미시 경제학」, 법문사, 1998, pp.186-187참조

20) *Ibid.*, p.197

따라서 등기대치선상에 존재하는 점들 중 동시에 무위험선상에 위치한 유일한 점 A는 손실의 기댓값  $P \cdot L$ 과 한 개인이 당해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즉 자신의 총부의 가치에서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동일한 값이 되는 지점이다. 결국 점 A는 한 개인에게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되면서 최대의 만족을 주는 기대효용극대화 수준이 된다.

[그림 1] UCP 500 합리성 요건 하에서의 수익자의 선택 행위



이미 기존의 한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sup>21)</sup> 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활용을 통해 서류치유원리를 효과적으로 적용받기 위한 효율적 선택행위들의 최적 조합들로 이루어진 합리적 서류 검토선(합리적 서류치유적용선)상의 한 점이 바로 점 A가 됨을 함의하고 있다.

점 A는 서류의 하자 정도를 중심으로 은행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서 서류 검토기간을 사용하는 정도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할 때 확보한 서류치유기간의 정도가 정확히 부합되어 균형을 이루는 상태임을 수익자 측면에서 표시해 주는 점이라 하겠다.

21) 김기선, “신용장거래관습 최적편성방안의 모색,” pp.121-124 참조

무차별곡선  $I_2$ 에 접하는 점 B는 UCP500하에서 은행이 자신의 서류검토기간 7일 전부를 활용할 때 7일만큼의 충분한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수익자가 은행으로부터 부분보장(partial assurance)되는 서류치유상태를 의미한다. 점 B는 수익자의 기대효용이 무위험선상 밖에 존재하므로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과 수익자의 서류치유기회가 상호 합치하지 않아 당해 수익자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 인해 UCP500하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UCP500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에 합리성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공정한 서류검토기간 활용을 유도, 점 B를 점 A로 이동시키려는 합목적성을 갖고 있었다.

은행과 수익자간의 무수한 분쟁과 마찰 속에서도 신용장통일규칙이UCP500에 이르기까지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을 유지해왔던 주된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이 같은 효율과 형평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함의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UCP600 제14조(b)항과 수익자 선택행위의 이분화<sup>22)</sup>

한편 UCP600 제14조(b)항의 개정결과 서류검토기간이 은행의 부존권역으로 확정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의 합리성 요건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수익자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 C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수익자가 보유한 자신의 서류치유기회라는 권익의 기대가치( $EW = W - PL$ )가 A점의 우측 아래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익자의 효용무차별곡선은 하향 조정되고 점 C는 무위험선 밖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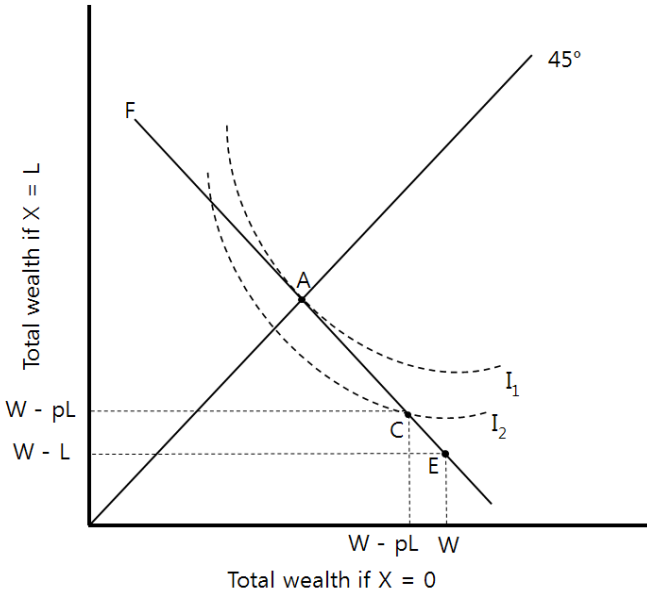
따라서 수익자가 서류치유기회를 전부 보장(full assurance)받길 원한다면 증가된 손실의 불확실성( $P \cdot L$ )만큼을 더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당해 수익자는 등기대치선상의 점 C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UCP500에서의 상황보다 더 많은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해

---

22)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 Harris Schlesinger & Neil A. Doherty, "Incomplete Markets for Insurance : An Overview,"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84, pp.413-414를 참조함

야만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치유의 기회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수익자는 UCP600 제14조(b)항하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직관에 의해서라도 은행의 부존적 서류검토기간이 완전 소비되는 유효기일 5일전 이상이 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 UCP 600 제14조(b)항하에서의 수익자의 선택행위(1)



결국 수익자가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치유기회를 전부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행위의 기대한계생산의 가치가 서류치유기간이라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한계부담비용의 극대값에 다다를 때까지 최대한으로 자신의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험 회피도가 더욱 더 큰 수익자에게는 더 많은 서류치유기간의 확보로 나타남은 자명할 것이다.<sup>23)</sup>

한편 [그림3]은 UCP600 14조(b)항의 개정결과 당해 규정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수익자 선택행위를 보여준다.

23) 보다 자세한 수학적 증명은 L.Dean Hiebert, "Optimal Loss Reduction and Increase in Risk Aversion,"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no.2, 1989, pp.300-305참조



[그림3]에 따르면 UCP500하에서 적절한 만큼의 서류치유기간 확보만으로도 소위 은행의 합리적인 서류검토기간 활용에 의해 서류의 치유가 가능하였던 수익자의 경우<sup>24)</sup> 금번 UCP600하에서 이전과 동일한 서류치유기간을 상정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길어진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완전 활용으로 인해 상정한 서류치유기간의 크기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서류에 내재된 하자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전혀 서류치유기간을 할애하지 않은 채 유효기일 당일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무차별곡선  $I_2$ 가 점 E에 접한다는 사실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  $x=0$ (하자 없는 서류의 제출로 수익자가 서류를 보완할 치유기간의 확보가 불필요한 상태)일 때의 수익자의 권익의 크기와  $x=L$ (하자있는 서류의 제출로 치유기간이 필요한 상태)일 때의 수익자의 권익의 크기가 점 E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당해 위험회피적 수익자는 EF의 등기대치선상의 점 E에 머물기를 선택하여 그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도 지불하지 않으므로써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 하려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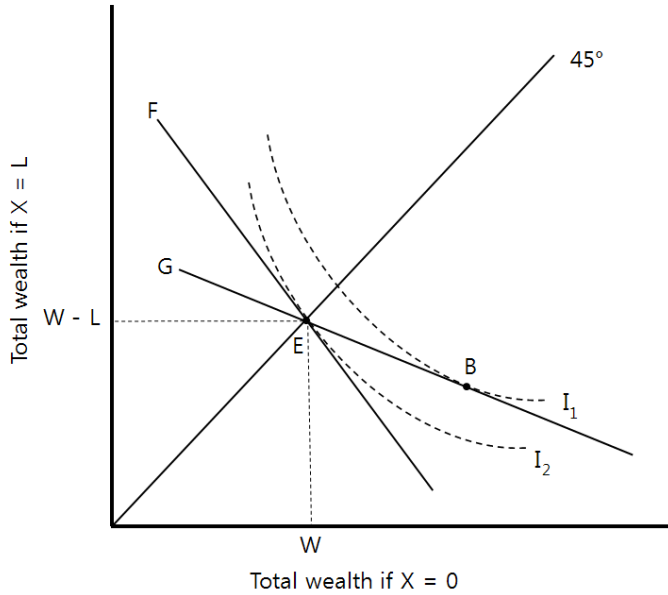
나아가 유효기일 도래 전 1일~4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수익자가 은행의 5일간의 서류검토기간 완전활용은 지나친 과잉수요 상태라 판단, 이는 공정한 서류 검토 행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EF 등기대치선은 EG로 변형되어 새로운 기대효용 극대화 수준이 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이 같은 수익자는 EG선상에서 점 B를 선택(무차별곡선  $I_1$ 이 점 B에 접함)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전 현상은 수익자가 서류하자 발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보조건부 지급(payment under reserve), 보증장부 매입(negotiation against indemnity ; L/G Nego )등과 같은 구제방법, 그리고 추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서류하자면제의 의사표시 내지 신용장 거래를 포기한 추심거래로의 전환 등과 같은 대안적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기대효용을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

---

24) 유효기일 1일~4일 전에 서류를 제출해 왔던 근면한 수익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림 3] UCP 600 제14조(b)항하에서의 수익자의 선택행위(2)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이 같은 후발적 조치에 의한 사후보장(reverse assurance)은 하자있는 불일치 서류가 유효기일 당일 또는 이에 임박하여 제출된 경우 거래의 좌절을 방지하고 수익자의 신용장 거래에서의 대금결제라는 합목적성을 달성케 해주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신용장 결제방식의 확실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장거래의 중심점인 은행을 단지 서류전달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손실의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선차적으로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하고 신용장거래에 임하는 [그림2] 유형의 수익자와는 달리 [그림 3] 유형의 수익자는 후발적 사후보장 방식이 더 높은 기대효용을 주기 때문에 손실방지노력을 포기한 채 하자있는 불일치 서류를 유효기일 당일에 제출한 후 오로지 사후보장 방식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신용장거래관습이 왜곡될 우려가 높다 하겠다.

## IV. 결론 : 연구결과의 시사점

신용장 통일규칙이 지난 5차 개정까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규정의 중심에 두었던 합리성 요건은 은행의 효율적인 서류검토기간 활용과 수익자에 대한 공정한 서류치유원리적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본원리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실제적용면에서 은행과 수익자간의 이해충돌의 근원으로 인식되면서 신용장 거래 실무분야에서는 제대로 그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UCP600 제 14조 (b)항의 개정은 이 같은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합리성 요건을 삭제하고 5일간의 서류검토기간을 은행의 부존적 권역으로 확정시켜 놓음으로써 서류검토기간을 보다 안정적인 은행의 행위기간으로 대체하였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법규나 규칙의 조정으로 인해 어느 당사자 일방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이전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는 공평한 법규나 규칙이 아닌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당해 비용이나 위험은 최적 배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했던 바는 수익자 측면의 서류치유원리 적용은 당해 조항의 합리성 요건의 삭제 후 그 어떤 보완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은행의 배려 행위로만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수익자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추가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수익자는 이전과는 다른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UCP600 제 14조 (b)항의 주된 파생효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UCP600 제 14조 (b)항의 개정 결과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단축유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의 서류치유원리의 적용은 은행과 수익자간의 협력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손실방지 체계의 하나로 수익자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자율적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변화 되었다.

둘째, UCP600 제 14조 (b)항은 본질적으로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서류치유원리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보다는 분쟁의 방지효과를 보장하는 강제화 된 균형조건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욱 강하기 때문에 다분히 은행에게 후생효과가 집중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합리성 요건

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서류검토와 서류치유간의 효율과 형평의 최적균형은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상태조건부재화 분석의 결과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은행으로부터 서류치유기회를 전부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행위의 기대한계생산의 가치가 서류치유기간이라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한계부담비용의 극대값에 다다를 때까지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위험회피도가 더 큰 수익자는 더 많은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하는 행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그간 적절한 수준의 서류치유기간(유효기일 5일 이전) 확보만으로도 서류의 치유·보완·재제시가 가능하였던 수익자의 경우, UCP600 제14조(b)항의 개정 결과 이전과 동일한 만큼의 서류치유기간 확보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모두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함에 따라 서류에 내제된 하자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오히려 서류치유기간을 전혀 할애하지 않은 채 유효기일 당일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선택한다.

다섯째, 이 같은 수익자 선택행위들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의 수익자 집단으로 양분되어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하나는, 위험 회피적이고 근면한 수익자 집단으로 유효기일 전 5일 이상의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서류치유기회 전부를 보장받으려는 계층군(서류치유전부보장 계층군 : full assurance tier)이며, 다른 하나는 서류하자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유효기일 당일 서류를 제출하는 수익자 집단으로써 추후 서류하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서류치유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유보조건부지급·보증장부매입·추심으로의 결제방식변경 등 후발적 사후보장 방식에 의존하려는 계층군(사후보장의존 계층군 : reverse assurance tier)이다. 이 결과 UCP500 하에서 유효기일 1일전~4일전까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은행의 합리적 협동행위를 촉구하여 서류치유를 분담하고자 했던 계층군(서류치유분담보장 계층군 : partial assurance tier)은 신용장 거래에서 사라지게 되거나, 상술한 두 계층군 중 하나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수익자 집단의 양분화는 신용장이라는 대금결제시스템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그 운용방식을 경직화시킴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진화·발전해 왔던 신용장 거래관습의 확대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효기일 당일 서류를 제출하는 사후보장의존 계층군 수익자와 어느 정도 근면성을 견지한 서류치유분담보장 계층군 수익자를 서류치유전부보장 계

층근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내재적 합리성을 견지한 은행의 배려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신용장 거래 관습의 규칙화는 신용장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립이나 마찰을 해결하고 공정한 행위준칙을 찾아내어 이를 일반화 또는 공식화 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관습의 최적의 설명규범이라 할 수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최대의 법률적·실무적 과제는 신용장거래관습의 효율적 확대성장을 도모하는 상태에서 신용장 거래의 실질적 권리당사자 모두의 편익과 거래위험을 형평에 맞게 실현하는 데 있다.

UCP600 제14조(b)항의 목표원리가 분쟁의 방지를 위한 서류검토기간의 안정화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그 개정 의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목표는 당사자들 간의 권익과 의무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형평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신용장거래질서의 최적 편성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지적해 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강태진 외 2인,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1998.
- 국찬표·구본열, 「현대재무론」, 비봉 출판사, 1998.
- 김종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김기선,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효율과 형평의 구현방식에 대한 규범적 접근,”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 11권, 1998.2
- , “신용장거래관습 최적편성방안의 모색: UCP600 제 14조 (b)항의 재 해석,”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 49권, 2011.2
- , “서류검토의 기술적 효율과 은행의 선택행위 결정,”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 24권 3호, 1999.12
- 박석재, “UCP 600에서의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7권, 2010. 8.
- 박세운, “UCP600에서의 복합운송서류 수리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24권 제4호, 2009. 12.
- 박세운·김영락·방두완, “서류심사에 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연구”,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21권 제4호.
- 서백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항구간 운송 선하증권조항의 해석”,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06
-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 “UCP600 이후 선하증권 하자관련 분쟁사례,” 「무역상무연구」, 제4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2.
- 오원석·서경,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의 기본원칙과 운송서류관련조항의 변경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8.
- 이용근·최유섭, “UCP600상의 서류심사관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 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 이제현·김연숙, “UCP600 운송서류조항의 개정내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
- 이준구, 「미시 경제학」, 법문사, 1998,
- 최석범, "UCP 600에서 서류관련규정상의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2006 동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 한재필, “UCP 600을 위한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한재필, “ISP98하의 보증신용장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UCP 600과의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 9.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Byrne, James E., The Comparison of UCP 600 & UCP 500, IIBLP, 2007.
- Cooter, Robert & Ulen, Thomas, Law & Economics, 2nd ed., Addison-Wesley, 1997.
- Copeland, Thomas E. & Fred J. Western, Financial Theory and Corporate Polily, 3rd ed., Addison-Wesley, 1992.
- Documentary Credit Insight, "Expert Commentary by Boris Kozolchyk," ICC Pub. S. A., Winter, 1997.
- Dolan, J. F., "Another view of notice without delay, disposal, and preclusion", DCI, Vol.11, No.2. ICC Publishing S.A. 2005.
- George, N. D., "Delete Reasonable time and without notice from the UCP", DCI, Vol.11, No.3. ICC Publishing S.A. 2005.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Ronald Press Co., 5th ed., 1974.
- ,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1990.
- Hiebert, L.Dean, "Optimal Loss Reduction and Increase in Risk Avers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NO.2, 1989.
- Letter of Credit update, vol.12, No.2, Feb. 1996.
- McLaughlin, Gerald T., "Letter of Cred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 *Fordam Law Review*, Vol. 50, 1982.

Posner, Richard A., & Parisi, Francesco, *Law and Economic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 vol.1, Edward Elgar Pub. Lid., 1997.

Schlesinger, Harris & Doherty, Neil A., "Incomplete Markets for Insurance : An Overview,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84.

Taneja, P., "UCP 600: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L/Cs", *DCI*, Vol.12, No.4. ICC Publishing S.A. 2006.

Varian, Hal R.,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Norton & Co., 1992.



## ABSTRACT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asonableness in UCP600 : Striking a Fair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Kim, Ki Sun

This study analyzes some important spin-off effects of the provision, UCP600 Article 14(6), through the methodology of the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theory based on the state-contingent commodities model. Some tech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isk-averse beneficiary will choose to present his documents more than 5 days before expiry date by paying a higher risk premium (so-called cure period) for full assurance to cure documentary discrepancies, if expressed economically, he pursues loss reducing activities to the point where the expected marginal product of his activities is less than its marginal cost. Secondly, where the effectiveness of securing cure period is uncertain, the risk-averse beneficiary will choose to present documents just on the expiry date without securing any cure period by paying no risk premium.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e safe harbor standard should be optimal solution only if it is supplemented by the hidden reasonableness standard for balanc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beneficiaries and banks.

Key Words : UCP600 Article14(b), Documentary Cure, Contingent  
Commodities